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86849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8684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48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변론종결 2022. 11. 24.

판결선고 2023. 2. 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48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 협의회 대표이고, B은 피고와 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4. 28. ‘피고가 원고에게 E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취지의 식당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갑”란에는 ‘상호: E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 협의회, 대표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G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 협의회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B은 2016. 4. 28. 원고에게 “본인은 산업부지 함바로 인해 5,0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9. 5. 23.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고(2018고단5815호),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수원지방법원 2019노3069호)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E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정비사업을 추진할만한 자금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정비사업 부지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여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B이 그 돈을 위 정비사업의 추진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28.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E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G 정비사업 부지에서 곧 철거가 시작되니 두 달 후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5,000만 원만 내면 식당 내부 시설 설치 비용 외에는 특별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3년 후에 상가도 제일 먼저 할인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도 마치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당운영 계약서상 갑 란에 위 지주협의회 대표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정비 사업은 당시 사업주체 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 지주협의회는 위 정비 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900만원권 수표번호 H, 3,000만원권 수표번호 I, 1,100만원권 수표번호 J)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2022. 6.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또는 민법 제110조, 제54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와 공모하여 마치 원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B이 G 도시환경 정비사업지주 협의회의 직인을 위조하여 날인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B에게 5,000만 원을 용역경비로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는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은 모두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계약서상의 인영과 피고가 제출한 대조물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대행용역계약서상의 인영, 인영날인지상의 인영이 동일인장에 의한 날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B이 G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 협의회 직인을 위조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2.경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일자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0. 8. 4. 제기되었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등 참조), 원고가 2017. 2.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고소는 결국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 등을 수사하여 만일 편취행위라고 판명이 되면 피고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고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고소 당시에 원고가 피고의 편취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거나 위 편취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8.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신미진, 판사 박미영